

# 정관

한화오션주식회사

# 목 차

|                                             |    |
|---------------------------------------------|----|
| 제 1 장 총 칙 .....                             | 6  |
| 제 1 조 상 호 .....                             | 6  |
| 제 2 조 목 적 .....                             | 6  |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 8  |
| 제 4 조 공고방법 .....                            | 8  |
| 제 2 장 주 식 .....                             | 8  |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 8  |
| 제 6 조 일주의 금액 .....                          | 8  |
|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 8  |
| 제 8 조 주식의 종류 .....                          | 9  |
| 제 8 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                      | 9  |
| 제 8 조의3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                   | 9  |
| 제 8 조의4 의결권배제·제한주식 .....                    | 10 |
| 제 8 조의5 전환주식 .....                          | 10 |
| 제 8 조의6 상환주식 .....                          | 11 |
| 제 8 조의7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 .....                   | 12 |
| 제 9 조 < 삭 제 > .....                         | 12 |
|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 12 |
| 제 11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13 |
| 제 12 조 < 삭 제 > .....                        | 14 |
|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 14 |
| 제 13 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16 |
| 제 14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 16 |

|                                               |    |
|-----------------------------------------------|----|
| 제 15 조 명의개서 대리인 .....                         | 16 |
| 제 15 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                     | 17 |
| 제 16 조 주주명부의 기준일 .....                        | 17 |
| 제 3 장 사        채 .....                        | 17 |
| 제 17 조 사채의 발행 .....                           | 17 |
|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 17 |
|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 18 |
| 제 19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 18 |
|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18 |
| 제 4 장 주주총회 .....                              | 19 |
| 제 21 조 소집시기 .....                             | 19 |
| 제 22 조 소집권자 .....                             | 19 |
| 제 23 조 < 삭    제 > .....                       | 19 |
| 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 19 |
| 제 25 조 소집지 .....                              | 20 |
| 제 26 조 의장 .....                               | 20 |
| 제 27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 20 |
| 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                          | 20 |
| 제 2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 20 |
| 제 3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 20 |
|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 20 |
| 제 32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                        | 20 |
| 제 32 조의2 < 삭    제 > .....                     | 21 |

|                                |    |
|--------------------------------|----|
| 제 3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 21 |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 21 |
| 제 34 조 이사의 수 .....             | 21 |
| 제 35 조 이사의 선임 .....            | 21 |
| 제 36 조 이사의 임기 .....            | 21 |
| 제 37 조 이사의 보선 .....            | 21 |
| 제 38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 22 |
| 제 39 조 이사의 직무 .....            | 22 |
| 제 40 조 이사의 보고의무 .....          | 22 |
| 제 40 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정 ..... | 22 |
|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22 |
|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 23 |
| 제 43 조 < 삭 제 > .....           | 23 |
| 제 44 조 이사회의 의사록 .....          | 23 |
| 제 4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23 |
| 제 46 조 < 삭 제 > .....           | 23 |
| 제 47 조 < 삭 제 > .....           | 23 |
| 제 48 조 위원회 .....               | 23 |
| 제 6 장 감사위원회 .....              | 24 |
|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 24 |
| 제 50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 25 |
| 제 51 조 감사록 .....               | 25 |
| 제 7 장 계 산 .....                | 25 |
| 제 52 조 사업연도 .....              | 25 |

|                                   |    |
|-----------------------------------|----|
| 제 5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 25 |
| 제 53 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 26 |
| 제 54 조 이익금의 처분 .....              | 26 |
| 제 55 조 이익배당 .....                 | 26 |
| 제 55 조의2 < 삭 제 > .....            | 27 |
| 제 56 조 중간배당 .....                 | 27 |
| 제 57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27 |
| 부 칙 .....                         | 28 |

# 정 관

2000. 10. 23. 제정  
2000. 10. 23. 변경  
2001. 03. 23. 변경  
2002. 03. 16. 변경  
2003. 10. 21. 변경  
2004. 03. 12. 변경  
2006. 03. 7. 변경  
2007. 03. 16. 변경  
2008. 03. 28. 변경  
2009. 03. 13. 변경  
2010. 03. 19. 변경  
2012. 03. 30. 변경  
2013. 03. 22. 변경  
2014. 03. 28. 변경  
2015. 12. 22. 변경  
2016. 03. 11. 변경  
2016. 03. 30. 변경  
2016. 08. 26. 변경  
2016. 11. 25. 변경  
2017. 03. 30. 변경  
2017. 05. 17. 변경  
2018. 03. 30. 변경  
2019. 03. 29. 변경  
2020. 03. 25. 변경  
2021. 03. 25. 변경  
2022. 03. 28. 변경  
2023. 05. 23. 변경  
2024. 03. 21. 변경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화오션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Ocean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 2) 선박건조 도면의 판매
- 3) 선박건조 계약 거래의 중개
- 4) 선박 및 부선의 임대 및 용선사업
- 5) 선박, 플랜트, 전기, 건설, 건축설비 및 각종 기계기기 생산을 위한 기술용역
- 6) 각종 육상 플랜트설비, 해상 플랜트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공
- 7) 각종 철구조물(철강교, 삭도, 철골, 건축물 등)의 설계, 제작 및 설치
- 8)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 설계, 제작 및 설치업
- 9) 환경오염방지 시설(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설계, 제작, 시공사업
- 10) 발전기, 터빈 및 발전소 설비 제작 및 설치, 소유 및 운영 기관제조 판매
- 11)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및 수질처리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시공
- 12) 창고 및 공장자동화설비 용역, 제작 설치 및 판매사업
- 13) 각종 공항 및 항만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 14)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사업
- 15) 일반건설(토목, 건축)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 16) 종합건설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공동주택 분양 및 관리사업
- 17) 전기 설계 및 공사, 전기통신 공사업
- 18) 준설, 포장 및 조경검사
- 19) 제철, 제강 설비제작 및 설치
- 20) 각종 관의 조립 및 그에 관련되는 제품의 제조사업
- 21) 용접관련 장비, 장치의 개발, 부품제조, 조립 및 판매
- 22) 산업용 및 조선용 전기, 전자기계와 기기의 제조 및 판매
- 23) 해저조사용, 작업용 장비의 설계, 제작,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 24) 각종 건구, 가구의 개발, 제조, 설치 및 판매업
- 25) 계량과 제조, 판매 및 검사
- 26) 선박용 엔진의 제작 및 판매
- 27) 내연기관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 28) 기관제작 및 내연기관의 제조, 수리 및 판매
- 29) 주물(주철, 알루미늄), 주철강, 단조품, 신소재 및 그 2차 제품 제조, 판매 및 고철매매업

- 30) 각종 건설기계, 특장차, 버스, 트럭, 승용차등 수송장비와 그 부품품 제조 및 판매
- 31) 건설기계, 자동차, 각종 기계의 정비 및 대여와 중고건설기계, 중고자동차, 기계류의 판매
- 32) 고소작업차 제조 및 판매
- 33)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 34) 항공기용 회전기관, 동력장치 부착기기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 개조, 정비, 시험, 판매
- 35) 유압기기 및 동 부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업
- 36) 압축가스 및 압력용기의 제조 및 판매
- 37) 영상 압축기기 및 멀티미디어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 38) 인공위성의 위성체, 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조립, 시험, 판매
- 39) 인공위성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 사업
- 40) 공장설비 시설에 관한 엔지니어링
- 41) 각종 산업시설 및 공장의 종합 엔지니어링 사업
- 42) 기술용역업
- 43) 조전소 건설, 운영 등 각종 공장설비시설에 관한 기술용역
- 44)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기술용역사업
- 45) 선박, 플랜트 및 각종 기계기기의 기자재와 그 부속품등의 제조, 판매, 구매대행 및 거래중개업
- 46) 각종 계측, 시험측정, 검사, 검교정의 대행 및 기술용역사업
- 47) 자원개발을 위한 시추 및 기술용역
- 48) 환경산업관련 기술용역 및 측정대행 서비스사업 및 공사업
- 49) 정보처리용역사업, 전산시스템(H/W, S/W) 개발 및 판매사업
- 50) 공장자동화(FA), 사무자동화(OA)및 데이터 통신사업
- 51) 항공, 자동차, 항만, 해상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 52)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및 항만하역에 관한 항만운송사업
- 53) 철도운영 및 부대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 54) 국내외 무역업 및 외국상사 대리점업
- 55) 관광개발사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사업
- 56)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 57)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사업
- 58) 컴퓨터 응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대여업
- 59) 운반기계 및 항만하역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 60) 각종기계, 기기(섬유, 농업, 광업, 전기, 전자, 금속 공작가공, 기계압축기, 재봉, 정밀, 연소, 의료, 위생, 사무용, 공장자동화용 및 동 관련시스템 개발품, 기타 일반 산업기계 및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설치 및 판매



- 61)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 62)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판매업
- 63) 금융 및 보험업
- 64) 수송, 하역, 보관, 포장, 물자유통 및 정보유통과 관련된 사업
- 65) 구난사업
- 66) 교육사업
- 67)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 운영, 기술 개발, 설비 제작 및 판매, 발전 및 전력의 판매
- 68) 해운업
- 69) 해상화물운송사업
- 70) 선박대여업
- 71)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72) 회사 보유 무형자산의 판매, 임대, 용역사업
- 73)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및 방재사업 관련기기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 74) 정보통신공사업
- 75)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ocea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47,072,016주와 기명식 우선주식 2,082,618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우선주식)**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③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3(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①이 회사는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또는 본 정관에서 정한 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주주에게 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라 하고, 이익배당우선주식과 함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분배한다.

③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잔여재산을 우선분배하고 남은 재산을 보통주식에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그 나머지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여부,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결권배제·제한주식)**①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이하 ‘의결권배제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이사의 선임·해임

2.감사의 선임·해임

3.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

③이익배당우선주식을 의결권배제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배제 또는 제한된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5(전환주식)**①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에 관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주식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 1.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 ⑤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⑦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6(상환주식)**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회사는 제8조의5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7(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추가배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한다. 다만,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우선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④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제9조(삭제 2023. 5. 23)**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의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또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삭제 2014. 3. 28)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②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기준일)** ①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3. 5. 23)

### 제3장 사 채

**제17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삭제 2023. 5. 23.)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삭제 2023. 5. 23.)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삭제 2023. 5. 23.)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상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동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관계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삭제 2009. 3. 13)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9명이내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회사의 이사회는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삭제 2023. 5. 23.)

③제1항의 이사는 법령이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9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삭제 2023. 5. 23.)

③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의 보고의무)**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3. 5. 23.)

**제40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정)**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3월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삭제 2023. 5. 23.)

⑤(삭제 2023. 5. 23.)

**제42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 의장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삭제 2023. 5. 23)

**제44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한도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 (삭제 2001. 3. 23)

**제47조** (삭제 2023. 5. 23)

**제48조(위원회)** ①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의결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1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행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행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장 계 산

**제5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의2** (삭제 2012. 3. 30)

**제56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전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삭제 2023. 5. 23)

⑤(삭제 2023. 5. 23)

**제57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설립등기후 즉시 400,000,000로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42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15.12.22.) 이전에 제1항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16.03.11.) 이전에 제1항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16.03.30.) 이전에 제1항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제18조의 경과조치)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1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16.11.25.) 이전에 제1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17.03.30.) 이전에 제1항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제18조의 경과조치)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1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17.05.17.) 이전에 제1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18.03.30.) 이전에 제1항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 3.(제18조의 경과조치)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1호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18.03.30.) 이전에 제1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제10조 및 제19조2의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9조2의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제36조의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내용은 시행 후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하며, 개정 시행 이전 이사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제48조의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제11조의 경과조치)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설정한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본 정관 시행일(2023.05.23.) 이전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 3.(제18조 및 제19조의 경과조치)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및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항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23.05.23.) 이전에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및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